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의 안 번 호	742

2015. 12. 18
도시계획관리위원회
수 석 전 문 위 원

1. 제안경위

○ 2015. 9. 11일 서윤기 의원 대표발의(2015. 9. 15일 회부)

2. 제안이유

○ 최근 아동,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의 발생 증가로 안전한 주거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으므로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적용을 고려할 필요 있음.

3. 주요내용

가. 시가 주택정책 수립·추진 시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적용에 관한 노력의무를 규정함(안 제3조제5항 신설)

나. 시·시민 및 주택사업자에게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적용에 관한 노력의무를 규정함(안 제4조제3항제5호 신설)

다. 민간임대주택사업 지원 요건인 적정한 주거환경에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적용을 포함함(안 제7조제2항)

라. 시장은 주택사업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 내용에 범죄예방환경설계 등을 포함함(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주택법」, 「임대주택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
다. 기　　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(별첨)

5. 검토의견

○ 이 개정조례안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 주택정책 및 주거환경 개선지원, 민간임대주택사업 지원 등에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서윤기 의원이 2015년 9월 11일 대표발의하여 9월 1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.

○ 아동,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고, 이에 대응하여 범죄예방디자인사업 시행[1], 범죄예방기본법안 발의('15.9. 서청원의원 대표발의) 등 다양한 정책 및 제도가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, 시·시민·주택사업자의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 노력 등을 규정한 이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○ 다만, 이 조례의 제8조(주거환경 조성)[2]에서 시·시민·주택사업자가 노력하여야 하는 주거환경 조성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, 안

---

1) 서울시에서는 2012년부터 범죄예방디자인사업(문화본부)·안전마을사업(안전총괄본부) 등을 시행하고 있음

2) **제8조 (주거환경 조성)** 시·시민 및 주택사업자 등은 주택과 그 주변의 환경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1. 주택의 적정한 일조권 및 주차공간 확보
2. 주변지역의 도로 확보
3. 주변지역의 진동·소음·악취 및 오염 등에 대한 최소화 대책 마련
4. 양호한 근린생활시설의 확보
5. 적정한 녹지공간 및 아동을 위한 놀이공간 확보 등

제7조 및 제9조에서 ‘적정한 주거환경’ 및 ‘주거환경개선’에 범죄예방환경설계를 포함하는 대신, “범죄예방환경설계의 적용”을 제8조에 신설하는 것이 조문 구성상 보다 체계적이라고 사료됨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시의 책무) ①~④ (생 략)	제3조(시의 책무) ①~④ (현행과 같음)
〈신 설〉	⑤ 시는 주택정책을 수립·추진함에 있어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제4조(시민의 노력 등) ①·② (생 략) ③ 시·시민 및 주택사업자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주택의 형태 및 규모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1.~4. (생 략) 〈신 설〉	제4조(시민의 노력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-----. 1.~4. (현행과 같음) 5.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적용 고려
제7조(민간임대주택사업 지원) ① (생 략) ② 시장은 적정한 주거환경을 갖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회복지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	제7조(민간임대주택사업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적용 등을 포함한 적정한 주거환경을 갖춘 ----------.
제9조(주거환경 개선지원) 시장은 주택사업자 또는 주택관련단체 등이 주택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·연구 및 캠페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.	제9조(주거환경 개선지원) ---------- 범죄예방환경설계 등을 포함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----------.